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72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권향엽 · 박지원 · 정혜경
최민희 · 이병진 · 박용갑
김 윤 · 김성환 · 이성운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경선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둌으로써, 정당

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7조의2제2항</u>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8. <u>제57조의2제2항·제3항</u> -----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